

바로 보는 법규·정책

Regulation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2026.03.19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법무부,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FAQ 발표

법무부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실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



주요 FAQ

- ▶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적용 대상은?
-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계획을 정정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 ▶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
- ▶ 개정 상법 시행 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개정 상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 ▶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시기
- ▶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회사에 해당하는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 ▶ 개정 상법 시행 전 자기주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상법시행 후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할지?

Source: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2026. 3. 11.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1.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적용 대상은?

A.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2.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A.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 권한)

-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추가로,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획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3.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A.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제2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제3호) 회사가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제4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제5호)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4.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

A.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는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제3자 신주배정 요건에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은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판결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5. 개정 상법 시행 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개정 상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 A.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6.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시기

A. 개정 상법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과 시행 전에
기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각각
1년과 1년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 내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사는 그 계획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각 유예기간 내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개정 상법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수년에 걸쳐 자기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 상법 부칙 제2조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7. 자기주식 소각 과정에서 회사에 해당하는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 A. 개정 상법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 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법 부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법시행당시 회사가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 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1. 「공기업을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바로 보는 법규·정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FAQ

Q8. 개정 상법 시행 전 자기주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상법시행 후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할지?

- A. 개정 상법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 상법 시행 후 취득한 경우라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부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